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-140호

「우편법 시행령」 제7조 및 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의하여 「복지
등기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(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-40호)」를 다음과 같이
개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0일

우정사업본부장

‘복지등기 우편서비스’ 시험적 실시

1. 개요

사회보장제도, 공공서비스, 재난·재해 정책 등 복지정보가 담긴 우편물을
배달하고,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, 복지시설 등에는 필요한 기초정보를
수집하여 전달하는 “복지등기 우편서비스”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함

*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예외 적용

2. 주요내용

가. 이용방법 : 우편관서와 이용계약 체결

나. 우편물 접수 : 우체국창구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

다. 배달취급 : 선택등기, 반환불필요, 일반등기

라. 요금체계 : 4,000원(200g까지, 전자우편 36매까지 단일요금 적용)

부 칙

1. 이 공고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2. 「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-40호」는 폐지한다.